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3.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26일, 한기호·송기헌의원 등 105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1.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 8. 26.) 상정,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 11. 20.)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6. 3. 11.) 상정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6. 3. 16.) 상정, 축조심사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6. 3. 1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

안반영폐기)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6. 3. 18.)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한기호・송기헌의원)

제안이유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며, 현행 제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수를 증원하고, 의회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며, 지방의회의 경비를 독립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6까지).

나. 국가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 및 강원전략연구사업 등에 대한 특례를 두어 지원을 강화하고,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의2,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다. 외국인 체류 및 정주기반 조정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의 체류에 대한 특례 등을 두어 글로벌 미래산업의 인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4까지).

라. 강원자치도 소재 소규모 초·중·고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합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4까지).

마. 미래산업글로벌 도시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글로벌 교육도시를 지정하며,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를 두어 외국대학교 유치 및 국제학교 설립 등을 허용함(안 제48조의5부터 제48조21까지).

바. 강원칡한우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안 제54조의4).

사. 댐수입금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조례로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의2 및 제68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 개요 및 총괄검토의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함)는 2022. 6. 10.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3. 6. 11. 시행되면서 종전의 강원도를 폐지함과 동시에 설치되었음.

또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강원자치도를 설치하는 외에 강원자치도에 실질적인 특례와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전부개정하였고 제명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도법」” 이라 함)으로 개정되어 2024. 6. 8. 시행되었음.

<제정법률 및 전부개정법률 개요>

구 분	제정법률	전부개정법률
제명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개정 및 시행	(제정) 2022.6.10 (시행) 2023.6.11	(전부개정) 2023.6.7 (시행) 2024.6.8
구성	본칙 총 23개 조항	본칙 6편 – 11장 –2절 총 84개 조항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지원방안 마련 (농업, 임업, 군사보호 등 권한이양 및 특례마련)

개정안은 강원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례를 추가적으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강원자치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부개정법률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에 따른 특례>

구분		특례 내용
제2편	자치권강화(제3장)	도의회 자율성 확보(§17의2~17의6)
	자치재정(제4장)	국유재산 처분 등 특례(§20의2)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관련 시설 양여(§20의3)
제3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기반 조성(제3장)	강원전략기술 육성 및 지원 등(§34의2)
		강원과학기술원 설립(§34의3)
		외국인 체류 및 정주기반 조성(제3절)
		출입국관리법상 특례(§44의2)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 체류(§44의3)
		초등학교 외국인 유학생(§44의4)
	교육환경의 조성(제3장)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운영(제1절)
		자율학교 운영(§45)
		교육지원청 설치(§48의2)
		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48의3)
		학교급식 운영(§48의4)
		글로벌교육도시의 조성(제2절)
		글로벌교육도시 지정 등(§48의5~48의7)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48의8)
		국제학교 설립 관련(§48의9~48의20)

구분		특례 내용
제4편	농업·식품산업·임업 등 진흥(제1장)	축산업 관련 특례
		가축방역관의 자격(§54의2)
		공수의의 업무(§54의3)
		강원칡한우 보호·육성(§54의4)
		해양 관련 특례
		항만배후단지의 지정(§58의2)
		선박등록특구의 지정(§58의3)
		해역이용협의 관련(§58의4)
		시험양식업 관련(§58의5)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발전 특례(제2장)	댐 주변지역 지원(§68의2·68의3)
		오염총량관리제 지역개발 부하량 관리(§68의4)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68의5)
	군사보호 및 미활용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제3장)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업무 지자체 위탁 등(§70)
		민·관·군협력위원회 구성·운영(§73의2)
	관광 및 문화예술의 진흥(제4장)	지역특화 관광산업의 육성(§73의3)
		국제회의산업의 육성(§73의4)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지원(§73의5)
	보건복지 및 의료서비스 증진(제5장)	바이오헬스산업 육성(§73의6)
		비대면 진료·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73의7·73의8)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73의9)
	지역경제 진흥 및 산업경쟁력 강화(제6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73의10)
		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73의11)
		지역 건설산업의 진흥(§73의12~73의14)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활용(§73의15)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73의16)
		석탄경석 자원화(§73의17~73의19)
		핵심광물 산업화(§73의20)
		경제자유구역 내 공유재산 임대조건 완화(§73의21)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강원자치도에 대한 권한이양과 특례부여와 관련된 사항을 대폭 신설하는 내용의 현행법 전부개정법률이 2024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강원자치도 또한 전부개정법률의 집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도 균형발전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을 고려하면 지역 발전을 위한 특례 부여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기존의 특별자치도에 부여된 특례를 강원자치도에 적용할 때는 당초 특례를 부여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시·도 구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무 또는 전국적 규모의 사무의 권한 이양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충분한 부처 간 협의·조정 후 특례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

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운영 (제2편)

1) 자치권 강화 : 도의회의 자율성 확보 (제3장, 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6까지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강원특별자치도도의회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 중 비례대표도의회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구도의회의원정수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 경우 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
<신 설>	제17조의3(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원 및 시·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그 밖에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신 설>	제17조의4(도의회 사무기구 및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전문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03조제1항 및 제125조제2항(기준인건비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도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운영 2. 도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 ②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

	사무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의5(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17조의4에 따른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7조의4의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존속기한의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 및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 및 의장은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지사 및 의장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 및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6(도의회의 예산) ① 도의회의 운영 관련 예산은 독립하여 강원자치도 예산에 계상(計上)한다. ② 의장은 도의회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 제출기일 30일 전까지 위원회가 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직접 예산요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감액 내용 및 사유를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① 강원자치도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함) 중 비

례대표도의회의원정수를 지역구도의회의원정수의 100분의 20으로 하는 특례, ② 도의회의원 및 시·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지방의회의원 정수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특례, ③ 5년의 기간 동안 강원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함) 사무기구의 설치·운영, 도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 및 ④ 도의회 운영 관련 예산을 독립하여 강원자치도 예산에 계상하는 특례 등을 규정하여, 도의회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른 도의회 자율성 특례>

구분	특례 내용
①	비례대표도의회의원정수를 지역구도의원정수의 100분의 20으로 규정(§17의2)
②	지방의회에 지방의회 정수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17의3)
③	한시적으로 도의회 사무기구 및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달리 정함(§17의4·5)
④	도의회 운영 예산을 독립하여 강원자치도 예산에 계상(§17의6)

(제17조의2)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시·도 관할구역 내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1].

1) 「공직선거법」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

개정안은 강원자치도의 비례대표도의회의원정수를 지역구도의회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법」”이라 함) 제36조[2]를 참조한 것으로 보이며, 도의회의원정수를 확대하여 면적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은 강원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려는 취지로 이해됨.[3]

다만, 개정안 검토에 있어서는 강원자치도의 지역적 특성, 강원자치도의 인구 1인당 도의원 비율(3.21명)은 전국 평균(2.25명)보다 높다는 점, 타 지방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함)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 행정체제 도입을 전제로 도의회의원정수를 「제주도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비례대표의회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권한 확대, 제주자치도에는

명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해당 시를 관할하는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해당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통합 전의 수를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한다.

④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

2) 「제주도법」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② 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의원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본다.

3) 강원자치도에 의하면 현재 강원자치도 도의원 1명이 담당하는 면적(343.5km^2)이 서울특별시 면적(605.2km^2)의 약 절반 정도에 해당함.

단층제 행정체제 도입을 전제로 부여된 점,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안 제17조의3)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으며[4], 이에 따라 현재 지방공무원으로 채용된 정책지원관이 지방의회의원 2인당 1명씩 배정되어 있음.

이는 지방행정의 복잡·전문화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에 따라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시 도입된 제도임.

개정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범위를 현행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에서 "지방의회의원 정수"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도의회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회 운영 지원의 효율성을 향상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 검토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원 2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 배정되는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5],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정책지원관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4)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관련보도 : "지방의회 의원에게 물었다 "정책지원관, 2인당 1명 배정방식 개선돼야"", 머니투데이, 2023.09.01.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강원자치도에만 정책지원관 인원을 증원할 경우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현재 정책지원관 제도가 운영 초기 단계라는 점, 매년 수반되는 인건비 등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두면서 전문위원의 수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강원자치도에는 현재 11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음[6].

또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 지방자치단체 내 행정기구의 설치, 지방공무원의 정원 등에 대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7][8].

---

6) **「지방자치법」**
제6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5] (일부 발췌)
1. 시·도

지방의원의 정수	전문위원		
	총 정수	4급	5급 이하
50명 이하	11명 이내	7명	4명

7)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내 사무기구의 설치·운영, 전문위원의 수 등 도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되(안 제17조의4), 특례의 존속기한을 법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존속기한의 연장 또는 폐지를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5).

이는 「제주도법」[9]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이라 함)[10]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조직 및 인력 운영에 가해지는 통제를 완화하여 자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의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강원자치도에 도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8)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및 [별표4]는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참고자료 참조).

9) **「제주도법」**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제103조제2항, 제1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25조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
3.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4. 지방공무원(도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을 포함한다)의 정원기준

10) **「세종시법」**

제15조(조직 특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면적·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주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자치시”라 함)의 자치도의회 및 자치시의회 기구·정원에 관한 특례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 행정체제 도입을 전제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업무 특성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강원자치도 출범 후 확대되는 의회 기능 및 역할에 대한 개별·구체적인 분석이 선행된 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17조의6)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가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11].

11)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

개정안은 도의회의 운영 관련 예산을 독립하여 강원자치도 예산에 계상하도록하면서, 지방의회 의장이 예산요구서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자치도지사가 예산을 편성 또는 감액함에 있어 의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견을 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도의회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을 참조한 것으로 보임.

<안 제17조의6 관련 유사 입법례>

「국회법」

제23조(국회의 예산) ① 국회의 예산은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한다.

② 의장은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에 제출한다. 다만,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산요구서 제출기일 전일까지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직접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③ 국회의 예산에 예비금을 둔다.

④ 국회의 예비금은 사무총장이 관리하되,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다. 다만,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다음 회기 초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정부가 「국가재정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국회 소관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견을 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감액 내용 및 사유를 적어 국무회의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른 송부가 있은 때에는 그 감액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해당 국무회의 1일 전까지 정부에 송부한다.

「국가재정법」

제40조(독립기관의 예산) ①정부는 독립기관의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재정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정부가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감액에 대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재정 자율성 증대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취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지방재정의 총괄적 운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안 제2항은 의장이 예산요구서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법」의 입법례를 참고할 때 예산요구서를 심사하는 위원회는 법률에서 특정하거나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현재도 지방의회 예산이 의회 의견수렴 등 사전 협의를 거쳐 편성되고 있다는 점, 「국가재정법」 상 독립기관[12]과 지방의회 간 차이점[13]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의회의 경비를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법안」[14]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12) 「국가재정법」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①이 법에서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13) 특히, 행정안전부는 헌법상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의결기관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역할, 지위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판례(2016두39825)의 태도를 고려할 때, 지방의회에 국회, 대법원 등 헌법상 독립기관과 같은 수준의 예산상 자율권을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임.

14) 「지방의회법안」 (의안번호 2200342,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제27조(경비) ① 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이를 계상한다.
② 의장은 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운영위원회"라 하며, 운영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본회의를 말한다)의 심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안의 심사 경과를 지켜볼 필요도 있어 보임[15].

참고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정한 예산안 제출기일(이하 이 조에서 "예산안 제출기일"이라 한다) 3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가 의회 소관 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직접 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감액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예산안 제출기일 15일 전까지 이를 의장에게 송부한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송부가 있은 때에는 그 감액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예산안 제출기일 7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한다.

15) 의안번호 2200342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2024.09.02. 전체회의 상정
의안번호 2202014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전체회의 미상정
의안번호 2203504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전체회의 미상정

1.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의회사무기구명	설치대상
의회사무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의회사무국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인 시・자치구,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이고 인구 10만명 이상인 군
의회사무과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미만인 시・자치구,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인구 10만명 미만인 군

2.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

구분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과장	과장 또는 담당관
시・도	서울특별시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부산광역시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그 밖의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시・군・구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및 [별표4]

2) 자치재정관련 특례 마련 (제4장)

(1) 국유재산 처분 등에 대한 특례 (안 제20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2(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관할구역에 위치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용도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관할구역에 위치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5년간 처분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은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매각할 수 있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는데[16], 행정재산은 처분이 제한되며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등에 한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함[17]. 한편, 일반재산의 경우 대부 또는 처분하거나 매각할 수 있으며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음[18].

---

16)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17) **제27조(처분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제40조(용도폐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8) **제41조(처분 등)**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제48조(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매각할 수 있다.
제49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안은 강원자치도지사에게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강원자치도 내의 국유재산에 대해 5년간 처분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처분이 제한된 국유재산을 강원자치도지사에게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도 소재 국유재산의 행정목적 활용 권한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강원자치도에게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하는「국유재산법」의 취지와 관리·처분 원칙[19], 국가의 재산권 침해 여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목적으로 사용 중인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권한, 국유재산에 대한 처분 제한 권한 등을 부여할 경우 국가의 행정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과 관련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방부는 현재 국유재산 매각대금으로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고

---

19)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3의2.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있으므로, 장기간 재산처분이 제한될 경우 사업지연, 취소가 우려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행 「국유재산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의 수의매각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특례를 두지 않고 현행 제도 하에서 적기에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한편, 「제주도법」은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입주기업에 수의의 방법으로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20], 제주자치도지사에게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2)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관련 시설 특례 (안 제20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3(대회 관련 시설의 양여에 관한 특례)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회직접관련시설(경기장으로 한정한다)의 사후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20) 「제주도법」
제165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도지사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국제기구(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공장과 그 밖의 국유재산·공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 5.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학교설립 인가를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양여되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창올림픽법」"이라 함)에 따른 대회직접관련시설 중 경기장[21]을 「국유재산법」[2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3]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원자치도에 의하면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최를 위해 국비·도비를 투입하여 9개소의 경기장을 건립하였는데, 올림픽 이후 강원자치도가

---

21) 「평창올림픽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대회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22) 「국유재산법」
제27조(처분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1.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7개소의 경기장을 관리중이며 나머지 2개소는 위탁하여 관리 중이나, 강원자치도가 관리하는 올림픽경기장 중 6개소는 국가대표 등 전문 스포츠 선수 중심의 이용 시설로 활용되어 운영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위탁관리 중인 경기장 또한 시설개보수, 장비교체 비용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관련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올림픽경기장의 효율적인 사후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강원자치도의 행·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장 소유권 이전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2018년 '평창올림픽 유산 관련 합의안' 내용에 반한다는 점,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민간위탁 등을 통한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평창올림픽 유산 관련 합의안 ('18. 10, 문체부.강원도.기재부.조직위)**>**

ㅇ **올림픽 유산 창출 및 확산 협력**
- 올림픽 기념관 조성, 평창올림픽 기념·연계 및 협력사업 개발·추진 등

ㅇ **올림픽 기념사업 전담 재단 설립 추진**
- 2018평창기념재단은 ① 올림픽 유산 계승 사업 ② **3개 경기장*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
  * 강릉 하키센터.스피드스케이팅장, 평창 슬라이딩센터
- 1단계 : '19년 상반기 조직위 해산 직후 올림픽 잉여금 출연 (유산사업 우선 추진)
- 2단계 : 강원도는 추가 재원 출연('20년 상반기), **문체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

영하여 3개 시설 예산지원(국가대표 등 전문선수의 시설 사용료 지원)

○ **지속가능한 경기장 시설 사후 활용방안 마련·운영**
- **강원도는** 올림픽 경기장 **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을 지며**, 이를 위해 재단과 협력함
- 시설 활용 활성화를 위한 경기대회 등 수요 창출 및 지원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는 대회 관련 시설 중 국유재산은 없으므로 안 제20조의3 제1항의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에서 "「국유재산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나. 미래글로벌산업도시 개발 및 기반 조성 (제3편)

1)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기반 조성 관련 (제3편 제2장)

(1) 강원전략기술 육성 및 지원 (제1절, 안 제33조의2·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3조의2(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화단지 육성에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34조의2(강원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미래 신산업의 발전 및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강원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강원전략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강원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비율을 낮출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전략연구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의3(강원과학기술원 설립)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강원과학기술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원과학기술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안 제33조의2)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함) 제16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함)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24], 동법 제19조부터 제23조는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특화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특화단지 지원 규정>

구분	내용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제20조	특화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비용 지원
제21조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제22조	특화단지 입주기관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특례
제23조	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또한, 현행 「강원도법」에 의하면 강원자치도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25]을 영위하는 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기술단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26].

---

24)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25)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한다)이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을 말한다.

26) 「강원도법」
제33조(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전략기술을 영위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이후 특화단지 육성에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강원자치도만의 차별화된 지원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유치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 이외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정여건, 타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도조례로 위임하는 것은 안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추가적 지원사항에 한정하고 그 외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에 맞게 제33조의2제2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안 제34조의2)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이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라고 함)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고 함)를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27], 동법 시행령에서 정부가

하는 과학기술단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같은 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과학기술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 기준을 정하고 있음[28].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납부하여야 하는 기술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29].

<현행법령상 기술료 및 수익 감면 기준 >

구분	내용
①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②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③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④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안은 강원자치도지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30] 중 강원전략연구사

---

2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2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이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라 한다)의 지원기준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9)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②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납부 기준, 제4항에 따른 감면 기준과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강원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고, 강원전략연구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 및 연구개발성과에 따른 수익 납부액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는 연구개발비 및 기술료·수익 납부 부담을 완화하여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현행 「강원도법」에 따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국가산업단지 내에 첨단전략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를 참조한 것으로 보임[31].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강원전략연구사업 지원 필요성,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이라는 현행법의 제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안 제34조의3)

---

31)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모 외의 방법으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이하 "전략연구과제"라 한다)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기본법」[32] 상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하여 강원자치도에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강원자치도 내 지역산업을 주도할 고급 인재를 육성하고 산·학 연계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우수한 이공계 교육환경 제공 필요성,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3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소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이라는 현행법의 제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한 임의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추후 강원과학기술원 설치에 관한 개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당초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강원도법」 전부개정법률안[34]에 강원자치도에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

---

32)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제29조(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① 정부는 산업계·학계·연구계가 한 곳에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에 따른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첨단 벤처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연구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조(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중요 사항) 법 제7조제3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3) 강원자치도는 현재 강원과학기술원 설립방향·형태에 대해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2024년 2월과 7월 국회에서 2차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방안'에 대한 토론회 및 포럼을 개최함

34)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9855

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35], 국회 심사 단계에서 제외되었음[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것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2024년 10월 현재 과학기술원은 전국에 4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모두 개별법률을 통해 설립되었음.

<과학기술원 현황>

구분	한국과학기술원 KAIST	광주 GIST	대구경북 DGIST	울산 UNIST
개교	1971년	1995년	2011년	2009년
목적	· 고급과학 기술인력 양성 · 기초·응용 연구수행 및 지원	· 첨단과학기술 고급 인재양성 · 산업계와 협동연구 · 외국과 교육·연구 교류 · 기술이전, 사업화, 창업지원	· 첨단과학기술 고급 인재양성 ·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 연구 · 기술이전, 사업화, 창업지원	· 첨단융합분야 글로벌 인재양성 · 산업계와 협동연구 · 외국과 교육·연구교류 · 기술이전·사업화, 창업지원
특별법	한국과학기술원법 (1980.12.31.)	광주과학기술원법 (1993.8.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2003.12.11.)	울산과학기술원법 (2015.3.27.)

35) 의안번호 제211985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
제42조(강원과학기술원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데이터활용 융복합산업, 정밀의료기기 등 첨단과학기술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과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취약한 과학기술기반을 해소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원과학기술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36) 전국적인 학령인구 및 강원지역 대학 신입생 충원률과 입학정원의 감소추세를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과 타 권역에서 유사한 요구가 남발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또한, 「강원도법」이 아니라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3.05.24.) 회의록 p16)

특화 분야	첨단융복합기술 국가전략분야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등	화학/물리, 전기전자컴퓨터, 첨단의료로봇, 그린에너지, 뇌과학, 뉴바이올로지	차세대에너지, 첨단 신소재
구성	5개 단과대, 7개 학부, 27개 학과	8학과	단일학부	3개단과대, 15학과, 2학부
재학생 (2023년)	11,059명	2,020명	1,664명	3,995명
정부출연금 (2019년)	2,026억 원	1,035억 원	865억 원	784억 원
경쟁률 (2024학년도)	10.5 (모집 950, 지원 8,413)	17.6 (모집 230, 지원 4,037)	25.8 (모집 230, 지원 5,730)	11.9 (모집 480, 지원 7.,473)

※ 자료 : 강원자치도

(2)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운영 (제2절, 안제42조)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생 략) ② 사업시행자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흥지구 내의 완충구역에	제42조(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진흥지구-------

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③ ~ ⑥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현행법상 “진흥지구”라고 규정된 사항을 “진흥지구”로 변경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해 보임.

(3) 외국인 체류 및 정주기반 조성 (안 제29조 및 제3절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17. (생 략) <신 설> 18.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부터	제29조(종합계획 수립) ① ----------. 1. ~ 17. (현행과 같음) 17의2. 외국인근로자정책 및 첨단지식분야 외국인유학생 육성에 관한 사항 18. ----------

제17호까지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호까지 및 제17호의2의----------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절 외국인 체류 및 정주기반 조성
<신 설>	제44조의2(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구·지구·단지·지역에 입주한 연구기관·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특구 2.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3. 제5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및 제8호의2에 따른 산업단지 5. 「관광진흥법」 제2조, 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② 제1항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마다 존속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례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마다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1항의 계속 적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계속 적용여부에 관한 결정을 따라야 한다.
<신 설>	제44조의3(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의 체류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모두 해당하는 외국인 중 도지사의 추천

	을 받은 자에 대한 영주자격의 요건의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강원자치도에 있는 대학에서 첨단지식산업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할 것 2. 연구경력, 실적 등이 우수할 것 3. 강원자치도에 있는 연구기관·기업 등에 취업 또는 창업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첨단지식산업분야는 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례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마다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1항의 계속 적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계속 적용여부에 관한 결정을 따라야 한다.
<신 설>	제44조의4(초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초등학교에 한정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외국인학교(초등학교에 한정한다)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8조의 외국교육기관(초등학교에 한정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에게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에게 장기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활동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안 제29조)

현행 「강원도법」은 강원자치도지사로 하여금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강원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첨단지식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종합계획에 "외국인정책 및 첨단지식분야 외국인 유학생 육성에 관한 사항"과 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안 제44조의2)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37]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기간의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특구, 단지 등을 규정하고, 법무부장관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마다 특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2024.12.27. 시행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도법」"이라 함) 제63조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38].

---

37) 「출입국관리법」
제8조(사증) ① 제7조에 따른 사증은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單數査證)과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複數査證)으로 구분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38) 「전북도법」
제63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구·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39]에 따라 법무부는 인구감소특별지역의 외국인 지역정착을 위하여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강원자치도에 의하면 해당 사업이 실질적으로 산업기반이 갖춰진 지역에만 적용됨에 따라 강원자치도에는 적용 대상 지역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강원자치도 내 연구개발특구,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산업기술인력이 필요한 특구, 단지 내에 외국인인력의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체류요건을 완화하려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강원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인력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외국인의 체류요건이 완화되는 특구 등>

구분	내용
①	「강원도법」 제32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②	「강원도법」 제33조에 따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③	「강원도법」 제58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1. 농생명지구
2. 복합단지
3. 문화산업진흥지구
4. 산악관광진흥지구

② 제1항의 특례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지가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지닌다.

3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6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국적법」에 따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접근성 보장
2.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사회통합교육 제공, 사회적응 지원, 내국인·외국인의 상호이해 증진 등의 사항
3.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다른 산업단지
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강원자치도의 산업기술인력 현황,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관리가 필요한 출입국관리 업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강원자치도에 의하면 강원자치도의 전체 산업기술인력은 14,071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2번째로 적으나, 전체 산업기술인력 대비 외국인 인력 비중은 가장 높음.

(안 제44조의3)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인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음[40].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① 강원자치도 내 대학에서 첨단지식산업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② 연구경력, 실적 등이 우수하며, ③ 강원자치도 내 연구기관·기업 등에 취업 또는 창업한 외국

40)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영주자격) ①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3.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인 중 강원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한 영주자격의 요건의 일부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해당 특례를 3년마다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재 타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강원자치도 내 이공계 전공 유학생 비율이 저조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공계 우수 외국인 인재에게 영주자격 요건을 완화·면제함으로써 강원자치도의 주력 산업 분야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대학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강원자치도 내 이공계 전공 유학생 현황>

전제전공과정	수도권		비수도권		강원	
71,078명	41,986명	59.1%	27,276명	38.3%	1,816명	2.6%
이공계과정	**수도권**		**비수도권**		**강원**	
10,864명	5,416명	49.9%	5,215명	48.0%	233명	2.1%

※ 자료 : 강원자치도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우수 이공계 인재 확보 필요성,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관리가 필요한 출입국관리 업무의 특성,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이라는 현행 법률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제21대 국회 당시 「전북도법」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체류자격 특례를 부여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41], 국회 심사 과정

41) 의안번호 제212408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제90조(외국인 유학생 특례) ① 도지사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의 장기체류자격 중 유학자격을 적용받아 전북자치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다른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의 장기체류자격 중 유학자격을 적용받는 외국인으로서 전북자치도 교육기관에 등록한 사람에게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시간을 확대 적용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전북자치도 내 이공계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연구경력·실적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에 대하여 영주·국적 취득 필요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고 취업을 하지 못한

에서 제외된 바 있음[42].

(안 44조의4)

국내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를 제외하고, 초등학교,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외국인유학생은 D-4-3 비자(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에 대한 일반연수 사증)를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학생의 부모 중 1인은 F-1-13 비자(외국인 유학생과 동반 체류하려는 부모에 대한 방문동거 사증)를 발급받아 자녀와 함께 입국할 수 있음.

<D-4-3 비자 및 F-1-13 비자 개요>

구 분	D-4-3	F-1-13
체류 자격명	초중고생	유학생부모
종 류	일반연수(D-4)	방문동거(F-1)
체류기간 상한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2년**
대상 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국인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등	

경우에도 영주・귀화 허가를 허용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추천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 및 배우자에게도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42) 사증업무는 전국적, 통일적 기준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구 분	D-4-3	F-1-13
해당자	상기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으로서 1)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 **초청 전액장학생**인 자 2) 자비부담 외국인유학생으로서 **후견인**이 있는 자	상기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의 **2촌 이내**의 친인척로서 외국인유학생 1명당 1명
요 건	**자비부담 외국인유학생**의 요건 - 학비(수업료, 기숙사비, 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를 전액 자비로 납부했을 것 **후견인**의 요건 · 국내 체류 중인 국민 또는 등록 외국인으로 해당 유학생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유학생 부모와 친분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유학원 및 홈스테이 관계자 등 불가)	**재정요건** 등 요건을 갖출 것 - 국내 체류 비용 부담능력이 있을 것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21개 국가 국민)
기타		정부기관 및 지자체의 초청 장학생은 원칙적으로 동반 부모 사증 발급 불가

※ 자료: 법무부 사증발급안내매뉴얼 바탕으로 직접 작성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초등학교, 초등학교인 외국인학교[43] 및 외국교육기관[44]에 입학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요건을 「출입국관

43)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

4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특례) 외국학교법인이 개발구역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개발구역"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리법」과 달리 정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에게는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하면서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활동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는 지방소멸로 인한 지방 인력 부족 및 학령인구 감소 문제 해소를 위해 강원자치도에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현재 강원자치도 내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국교육기관 입학생에 대한 체류자격 특례는 해당 교육기관의 설립 경과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사증업무의 경우 전국적, 통일적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는 성격이라는 점,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당초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전북도법」 전부개정법률안[45]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교육기관 등에 입학하려는 외국인으로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외국인 및 그 부모에 대한 체류자격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46]되어 있었으나, 제21대 국회 심사과정에서 제외[47]되었고,

---

45)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4084호
정운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4085호

46) **의안번호 제212408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안 제91조(중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중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중·고등학교 외국교육기관, 이 법 제98조에 따른 중·고등과정 국제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으로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에 대하여 체류자격 요건을 달리 부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추천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에게도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법무부의 수정의견을 고려하여 전북자치도 내 지구·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특례를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내용[48]이 포함되었음.

2) 교육환경의 조성 관련 (제3편 제3장)

(1)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운영 (제1절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5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	제1절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운영 제45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제23조제2항·제3항----------

47) 전국적·통일적 기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체류자격 등 사증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의견이 있었음.

48) 「전북도법」
제63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구·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농생명지구
2. 복합단지
3. 문화산업진흥지구
4. 산악관광진흥지구

② 제1항의 특례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지가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지닌다.

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8조의2(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48조의3(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소규모(학생수 60명 이하를 말한다)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협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협동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48조의4(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특례)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급식법」 및 「식품위생법」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 도조례로 정한 학생 수 이하의 학교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중 도조례로 정한 원아 수 이하의 유치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급식센터의 시설・설비 기준 등 관리・운영에 관하여 「학교급식법」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동급식센터의 대상학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안 제45조)

현행 「강원도법」 은 강원자치도 내 자율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의 적용이 제외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자율학교 운영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49]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강원자치도 내 자율학교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구속되지 않도록 하려는 특례를 추가하려는 것임.

이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에 구속되지 않고 자율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상 자율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제주도법」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50].

참고로, 당초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강원도법」 전부개정법률안[51]

---

49)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50) 「제주도법」
21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에는 강원자치도의 자율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특례가 포함되어 있었으나[52], 제21대 국회 심사과정에서 제외되었음[53].

한편, 「전북도법」 또한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음[54].

국가교육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제23조제2항의 취지가 모든 국민에게 균형있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학교 간, 학생별 발생할 수 있는 교육격차를 예방하려는 것임을 고려하면, 자율학교에 교육과정 적용상 특례를 부여할 경우 고교·대학 진학 등 상급 학교 진학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48조의2)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

51)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9855

52) **의안번호 제211985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
제60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53) 체계적 교육과정 위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되었음

54) **「전북도법」**
제112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전북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있음[55].

개정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강원자치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강원자치도에 교육지원청의 설치에 관한 자율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제주도법」 제80조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56].

이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양양군에는 별도의 교육지원청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이 속초시와 양양군을 동시에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음에 따라 양양군에 별도의 교육지원청을 설치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교육지원청 신설로 교육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만, 「제주도법」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고 행정시를 설치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교육지원청 설치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 및 명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7]이 발의되어 교

---

5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6) **「제주도법」**
80조(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57) 의안번호 2204254(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354(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471(추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752(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073(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육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안의 심사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임.

(안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

개정안은 강원자치도 내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 초·중·고등학교가 강원자치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협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규칙 제·개정, 학교별 학교회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초·중등교육법」상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

구분	내용
1	학교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8)
2	학교별 학교회계의 설치(§30의2)
3	학교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30의3)
4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30의4)
5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31②·③)

또한, 개정안은 강원자치도 내 원아 수 또는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하인 유치원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공동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공동급식센터 설치·운영 및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강원자치도에 의하면 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은 적정한 학생규모 유지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소규모학교 간 연계·협력하는 학교 운영 형태로, 강원자치도 내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소규모학교비중이 높다는 현실을 고려하면[58] 협동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최소

58) 강원자치도에 의하면, 도내 약 75%의 학생이 6개 시·군(춘천, 원주, 강릉, 속초, 양양, 동해)에서 학습중이며, 나머지 12개 시·군의 소규모학교 비율은 초등학교 68%, 중학교 57%, 고등학교 29%임

한의 학생 수를 유지하고 학생 간 상호작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강원자치도에 의하면 소규모학교가 증가하면서 소규모학교의 경우 급식시설·설비 유지의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운영비가 과다 소요되어 원활한 급식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공동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48조의3은 소규모학교를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로 정의하고 있는데, 협동교육과정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 수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공동급식센터는 대량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59]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식품위생법」[60]에 따른 집단급식소

---

59)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60)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3.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5.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생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7.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신고를 하고 동 법에 따른 의무가 적용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식약처는 '공동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하더라도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면 「식품위생법」 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신고를 하고 준수사항을 적용받도록 할 필요 있다는 입장임.

(2) **글로벌교육도시의 조성 관련 규정** (제2조, 제2절 신설)

개정안은 제2절 "글로벌교육도시의 조성"을 신설하면서, 글로벌교육도시 지정의 지정(제48조의5),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제48조의6), 글로벌교육도시 내 공유재산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제48조의7), 외국교육기관(제48조의8) 및 국제학교 설치에 관한 사항(제48조의9부터 제48조의21)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8.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9.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사용·조리하지 말 것
10.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11. 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③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제22조, 제37조제7항·제9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집단급식소 운영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미래산업글로벌도시”란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 등이 가져오는 새로운 산업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첨단산업 육성, 자유로운 기업활동, 국제적 수준의 인력양성,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및 국제교류의 중심기능이 활성화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산업글로벌도시”란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 등이 가져오는 새로운 산업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첨단산업 육성, 자유로운 기업활동, 국제적 수준의 인력양성,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및 국제교류의 중심기능이 활성화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2. “글로벌교육도시”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제48조의5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2절 글로벌교육도시의 조성 제48조의5(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일정 지역을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글로벌교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자치도 교육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글로벌교육도시 조성에 필요한 부지와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글로벌교육도시 활성화 및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4. 그 밖에 글로벌교육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도지사는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국가와 강원자치도 및 시·군은 글로벌교육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변경·해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48조의6(외국어교육 환경 조성) ① 국가, 강원자치도 및 시·군은 글로벌교육도시의 외국어교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외국어 서비스 제공 2. 공공시설물의 외국어 표기 3.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 등의 외국어사용 환경 조성 4. 그 밖에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48조의7(공유재산의 매각등)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글로벌교육도시에 있는 공유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가(時價) 이하로 매각하거나 대부·사용·수익(이하 이 조에서 “매각등”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1.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매각등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매각등의 목적에 맞게 사

	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는 미리 도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토지를 제48조의9에 따른 국제학교의 교사·교지 등으로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시가(時價) 이하로 공급가격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48조의8(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도교육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도지사 ② 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외국대학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과 도지사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둔다. ⑤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 또는 강원자치도 및 강원자치도의 시·군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⑧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은 "도교육감"으로, 외국대학은 "도지사"로 보고,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은 제외한다)은 "도조례"로 본다.
<신 설>	제48조의9(국제학교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글로벌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1. 국가, 강원자치도 또는 시·군 2. 국내 법령 또는 외국 법령(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국제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48조의10(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48조의11(국제학교 설립계획의 승인) ① 제48조의9제1항제1

	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갖추어 설립계획에 대하여 도교육감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48조의9제1항제2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설립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국제학교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받은 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주요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48조의12(국제학교의 설립승인 등) ① 제48조의11에 따라 설립계획을 협의 또는 승인받은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교육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제학교의 설립·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주요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학교의 설립 및 변경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48조의13(국제학교의 위탁운영 등) ① 제48조의9제1항제1호의 자는 설립한 국제학교의 운영을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같은 항 제2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국제학교는 국제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로 본다. ② 제48조의12제1항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승인을 받은 법인(이하 “국제학교법인”이라 한다)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운영을 제48조의9제1항제2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제학교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48조의14(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① 국제학교법인은 설립승인을 받은 국제학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승인일부터 3주 안에 「민법」 제50조에 따른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 설>	제48조의15(국제학교의 운영 등) ①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하되, 국어 교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입학하는 외국인에게는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제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학년도,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등 수업에 관한 사항 2. 학년제, 수업연한 등에 관한 사항 3. 국제학교의 교과용 도서 사용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입학자격, 입학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국제학교의 학교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의 평가, 평가의 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인 국공립 국제학교의 수업료에 관한 사항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다. ⑤ 국제학교의 장은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

	을 수학(受學)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해당 학교 과정에 입학(재입학·전학·편입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⑥ 국제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⑦ 국제학교의 학생은 국제학교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48조의16(다른 법률의 적용) ①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기록, 학생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5조제1항 및 제30조의6을 적용한다. 다만, 학생생활기록의 구체적인 작성과 그 방법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에 알맞은 방법으로 학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법」 제31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라 휴업명령·휴원처분 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48조의17(국제학교의 교원임용 등) ①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의 자격과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제학교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이 설립·운영하는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임면, 복무, 신분보장·사회보장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54조의2,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4까지 및 제70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에게는 같은 법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학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국공립 국제학교의 교원에 한정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35조 각 호의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국공립 국제학교의 장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국제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국제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국제학교의 장은 내국인 교원과 외국인 교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48조의18(국제학교의 회계처리 등) ① 국제학교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처리는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을 따른다. ③ 국제학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④ 국제학교법인의 기관과 해산·합병은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국제학교법인의 기관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신 설>	제48조의19(「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

	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국제학교의 지도·감독, 재정지원 및 이에 따른 조치, 국제학교의 폐쇄승인 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학교법인"은 "국제학교법인"으로, "외국교육기관"은 "국제학교"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국제학교의 장"으로, "교육부장관"은 "도교육감"으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학과"는 "학교"로 본다.
<신 설>	제48조의20(국제학교 학생 선발의 특례 등) ① 국제학교의 장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대상자를 입학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도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48조의21(국제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제학교의 장은 국제학교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또는 수업료 감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방안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제학교란 외국인학교,[61] 외국교육기관[62]과 다르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주자치도에 설치된 학교로, 내국인 및 외국인 학생정원 쿼터[63]없이 제주자치도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

61)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국인 자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의 자녀교육을 대상으로 하며, 내국인 쿼터를 30%로 둠(20%추가 가능, 최대 50%)

6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또는 제주자치도 내에 설립, 내국인 쿼터를 30%로 둠(20%추가 가능, 최대 50%)

63) 외국인학교의 경우 국내학생 비율과 외국인학생비율의 제한이 있으나, 제주도에 설치되는 국제학교는 학생의 100%를 내국인으로 채울 수 있음.

력 양성을 목적으로 국가・제주・국내외 법인(영리법인 포함)이 설립하는 학교이며,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을 적용받지 않아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함.

개정안은 강원자치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글로벌교육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강원자치도 내에 외국교육기관과 국제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는 「제주도법」의 영어교육도시의 지정, 외국어교육기관의 설치 및 국제학교 설치에 관한 제반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교육도시의 취지에 맞게 교육부 및 관련법률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국제학교를 설립함으로써 제주자치도와 같이 국제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과 제주도법 비교>

개 정 안	제주도법	비 고
제2조(정의)·제48조의5(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 등)	제221조(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등)	제주법과 유사 (영어→글로벌, 지정요건 명시)
제48조의6(외국어교육환경 조성)	제234조(영어사용 환경 조성)	제주법과 유사 (영어→외국어)
제48조의7(공유재산의 매각등)	제222조(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제주법과 유사 (양여 → 매각, 항 추가)
제48조의8(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제220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제주법과 유사 (몇개 항 삭제)
제48조의9(국제학교의 설립 등)	제223조(국제학교 설립 등)·제225조(국제학교 설립자격)	제주법과 동일
제48조의10(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2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주법과 동일
제48조의11(국제학교 설립계획의 승인)	제226조(설립승인 등)	제주법과 유사 (설립계획-설립승인 구분)
제48조의12(국제학교의 설립승인 등)		

개 정 안	제주도법	비 고
제48조의13(국제학교의 위탁운영 등)	제227조(위탁운영 등)	제주법과 동일
제48조의14(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제232조(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제주법과 동일
제48조의15(국제학교의 운영 등)	제228조(국제학교의 운영 등)	제주법과 유사 (도조례→학교규칙)
제48조의16(다른 법률의 적용)	제229조(다른 법률의 적용)	제주법과 동일
제48조의17(국제학교의 교원임용 등)	제230조(교원임용 등)	제주법과 동일
제48조의18(국제학교의 회계처리 등)	제231조(회계처리 등)	제주법과 동일
제48조의19(「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제233조(「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제주법과 동일
제48조의20(국제학교 학생 선발의 특례)	-	
제48조의21(국제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	

다만,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글로벌교육도시 지정을 통한 지방소멸 문제 해결 가능성,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글로벌교육도시 지정이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이라는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국제학교의 설치·운영이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제주도법」과 달리 국제학교의 장이 국제학교에 특례대상자를 입학시킬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학교 학생에 대한 수업료 감면 등 교육지원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타 교육기관 및 학생과의 형평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당초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강원도법」 전부개정법률안[64]에는 강원자치도 내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65], 제21대 국회 심사과정에서 제외되었음[66].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제주형 국제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영리법인이 성립가능한 예외적인 학교로 강원자치도에 국제학교를 설치할 경우 초·중등 공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을 활용하거나 기존 초·중등학교를 활용한 학교·교육과정 다양화 등을 통해 국제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참고로, 개별 조항에 대하여 관계 부처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관련 규정	관계 부처	의견 및 사유
§48의7(공유재산의 매각 등)	**행안부**	-(**신중검토**) 매각 관련 : 시가 이하 매각 특례는 **공유재산법령에 반**하는 사항으로 이를 허용 시 **지방재정 손실** 발생 -(**신중검토**) 사용허가·대부 관련 : 특정단체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지자체의 **건전 재정** 운용에 **손실** 발생,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공유재산 **정책 목적 활용** 등에 **제한** 발생
§48의8(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교육부**	-**(수정필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여 추천권자를 정할 경우, 외국교육기관은 **추천권자**와 **승인권자**가 동**일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고등 외국교육기관은 추천 절차가 없도록 예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64)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9855

65) 의안번호 제211985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 안 제67조부테 제80조까지

66) 제21대국회 당시 발의된 의원안은 글로벌교육도시가 아니라 교육특구를 지정하고, 교육특구 내에 외국교육기관과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이었으나, 교육특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교육자유특구와 비슷하여 심사경과를 지켜본 뒤 제도의 도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제21대국회 제406회국회(임시회)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p28 참조)

§48의9(국제학교의 설립 등)~§48의21(국제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신중검토**) 개정안의 **국제학교**는 학교 운영과 무관한 영리법인이 설립 가능하며 내국인 학생이 비율·자격 제한 없이 입학 가능한 **예외적 학교**로 설립 가능 지역 확대는 신중 접근 필요
	제주자치도	-(**신중검토**)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특례 요구로 국제학교 난립 우려
	제주자지도교육청	-(**신중검토**) 국제학교 난립에 따른 불필요한 경쟁 유발, 교육 정책의 일관성 훼손 우려
§48의15(국제학교의 운영 등)	**국가교육위**	-**(수정필요)**「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과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과의 교육과정을 정하는 기관을 국가교육위원회로 수정 필요

다.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제4편)

1) 농업·식품산업·임업 등 진흥 관련 (제1장)

(1) 축산업 관련 특례 (안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4조의2(가축방역관의 자격 등에 관한 특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의 임명·위촉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54조의3(공수의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수의사에게도 같은 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된 수의사는 「수의사법」에 따른 공수의로 본다. ② 제1항과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동물진료 업무에

	관한 수의사의 위촉·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54조의4(강원칡한우의 보호·육성을 위한 특례) ① 도지사는 강원칡한우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연구와 보호·육성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축산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칡한우로 인정한 개체가 거래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강원칡한우의 사육실태 조사, 그 유전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안 제54조의2 및 제54조의3)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67]은 가축방역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수의직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및 「수의사법」에 따른 공수의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수의사법」에 의하면 동물병원을 운영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만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음[68].

---

67)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은 수의사여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3조(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이하 "가축방역관"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으로서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중에서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중에서 위촉한다.

68) 「수의사법」
제21조(공수의) ① 시장·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와 제6호의 업무만 위촉할 수 있다.
1. 동물의 진료
2. 동물 질병의 조사·연구
3.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자격과 임명·위촉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사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않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않는 수의사 등을 가축방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강원자치도의 가축 방역 및 축산물위생 검사 등의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제주도법」[69] 및 「전북도법」[70]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안 제54조의4)

개정안은 강원자치도지사에게 강원칡한우의 혈통을 보존하고 보호·육

---

6.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 "공수의(公獸醫)"라 한다]는 시장·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69) **「제주도법」**

제285조(가축방역관의 역할 등에 관한 특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의 자격과 임명·위촉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86조(수의사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수의사에게도 같은 항 제2호·제5호의 업무로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동물진료 업무에 관한 수의사의 위촉·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전단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70) **「전북도법」**

제83조(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의 자격과 임명·위촉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수의사에게도 같은 항 제2호·제3호·제5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수의로 위촉한 수의사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성할 수 있는 권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축산법」[71]에 따라 토종가축으로 인정한 칡한우의 거래를 권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강원칡한우의 사육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축산법」[72]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73]의 장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강원자치도의 고유 재래종인 칡한우의 유전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이를 브랜드화·산업화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제주도법」[74] 및 「전북도법」[75]을 참조한 것으로 보임.

---

71) 「축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말한다.

72) 「축산법」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고 가축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73)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지정」에 의하면 가축개량총괄기관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임

74) 「제주도법」
제287조(제주흑우의 보호·육성) ① 도지사는 제주흑우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연구와 보호·육성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흑우, 제주흑우의 수정란 또는 정액을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주흑우의 사육실태조사, 그 유전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반출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뒤에 도조례로 정한다.

75) 「전북도법」
제25조(한우산업의 보호·육성) ① 도지사는 우량 한우집단 구축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에서 생산·선발된 유전능력이 우수한 고품질 한우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능력한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능력한우에 대한 육종개량 시험연구와 보호·육성을 위하여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전북자치도 한우의 개량, 그 유전자원의 수집·보존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등** (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5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8조의2(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강원자치도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45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강원자치도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항만법」 제44조제1항의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적기준은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제58조의3(선박등록특구의 지정) ① 선박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강원자치도 내 무역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한다. ②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선박으로서 제1항에 따른 무역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 및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선박등록특구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8조의4(해역이용협의에 관한 특례) ①「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1. 해수욕장 이용에 관한 사항 2. 수상레저사업에 관한 사항 3. 준설·양빈에 관한 사항 4. 지역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관한 사항 5. 소규모 휴게쉼터·조형물 설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8조의5(시험양식업 특례) ①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양식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안 제58조의2)

현행 「항만법」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할 수 있음[76].

76) 「항만법」

제44조(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45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한다.

1. 1종 항만배후단지: 무역항의 항만구역 또는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2. 2종 항만배후단지: 항만구역 또는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로 지정한 지역은 제외한다]에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제고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현재 항만배후단지는 부산, 인천, 광양, 마산 등에 8개소 지정되어 있으나, 강원자치도에 의하면 강원자치도 내 항만은 배후단지 지정을 위한 일반적 조건은 충족하나 부지 확보 문제로 배후단지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강원자치도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면적기준을 완화(30만제곱미터 이상→미만)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는 강원자치도 내 항만시설의 기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성장 거점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동해안권 항만개발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항만정책은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원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전국 단위로 추진되어야 하는 항만 정책의 특성, 다른 항만과의 형평성 및 항만정책 수용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항만배후단지 지정 및 개발에 특정 지역의 여건·특성을 반영하는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항만배후단지 특례를 의무화하기 보다는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항만법」이 항만배후단지 지정을 위한 면적기준을 직접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별법인 「강원도법」에서 해당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법령체계상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임.

(안 제58조의3)

개정안은 강원자치도 내 무역항[77]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하고, 무역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과 외국선박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제주도법」[78]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현재 선박의 등록지를 우리나라로 유치하기 위한 제도로서 제주자치도에 국제선박등록특구가 지정되어 운영중인데, 한국해운협회에 의하면 현재 제주자치도의 국제선박등록특구의 수요가 과도하여 제2의 특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강원자치도 내 항만을 국제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하고 특구 내 등록된 선박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선박 및 관련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글로벌해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조세특례제한법」[79] 및 「지방세특례제한법」[80]은 해당 법률

77) "**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그 명칭, 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의미함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항만법」 제2조제2호)

78) **「제주도법」**
제443조(선박등록특구의 지정) ① 선박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내 무역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한다.
②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선박으로서 제1항에 따른 무역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선박등록특구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9)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에 따르지 않고는 조세특례 또는 지방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법상 재량 규정을 두는 것은 실질적인 조세감면 효과가 없으며,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경우 해당 법률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행정안전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지 않고 개별법에 감면 규정을 두는 것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며, 일반 납세자가 지방세 등 감면이 가능하다는 오해를 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 신설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58조의4)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의 면허·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면허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면허등을 하기 전에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법 제20조 및 제84조에 의하면 해역이용협의란 해역이용의 적성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으로,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이용행위가 지속가능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한 절차에 해당함.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의 대상>

---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구분	면허등
1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매립면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	양식업면허(「양식산업발전법」)
3	바다골재채취예정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바다골재채취의 허가(「골재채취법」)

개정안은 해역이용협의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해수욕장 이용, 수상레저사업 등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으로, 주로 해양관광산업과 관련된 사항을 이양하여 강원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에 맞춘 해역이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되는 사항>

구분	사항
1	해수욕장 이용에 관한 사항
2	수상레저사업에 관한 사항
3	준설・양빈[81]에 관한 사항
4	지역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관한 사항
5	소규모 휴게쉼터・조형물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협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 강원자치도의 지역적 특수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동일 행위에 대해 지자체별로 다른 협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장에서 협의를 수행하는 사업자 또는 대행자의 혼

81) 해안침식 저감·방지 또는 해빈 안정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해빈에 인위적으로 모래를 공급하여 넓히는 것을 의미함 (네이버 지식백과)

란이 우려되며, 협의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제정 등 제도개선이 추진 중이므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강원자치도는 해수욕장 이용, 수상레저사업 등은 환경 영향이 경미한 사업으로 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에 해당하여[82], 해당 권한을 강원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여 관련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안 제58조의5)

현행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양식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품종, 양식방법과 양식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험양식업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시·도지사는 시험양식업계획을 세워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83].

개정안은 시험양식업 계획 승인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강원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시험양식업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이 아니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

---

8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61조는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을 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하 "일반해역이용협의사업"이라 한다)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이하 "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있음.

83)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시험양식업 및 연구·교습양식업) ①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외의 새로운 품종, 양식방법과 양식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양식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외의 새로운 품종, 양식방법과 양식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식업자, 제1항에 따른 신청자 및 시험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험양식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험양식업계획을 세워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험양식업 및 연구·교습양식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는 시험양식업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시험양식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양식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이며, 「전북도법」[84]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2)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2장)

(1) 댐 주변지역 지원 특례 (안 제68조의2 및 제68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8조의2(댐수입금 등의 공개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에 건설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댐사용권자"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다목적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수입금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84) 「전북도법」
제88조(시험양식업 특례) ①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양식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댐사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사용권자인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징수한 사용료 2.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용료 3. 발전판매(發電販賣) 수입금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 등의 자료 제출의 방법, 시기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8조의3(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등의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건설된 총저수량 10억톤이상의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댐사용권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재원과 별도로 해당 다목적댐에서 발생하는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및 전전년도 생활용수·공업용수 판매를 통한 수입금의 100분의 20을 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에 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을 조례로 설치·운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해당 다목적댐 주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2. 그 밖에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안 제68조의2)

개정안은 도지사가 강원자치도에 건설된 다목적댐의 댐사용권자에게 댐사용권자가 해당 담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발전판매 수입금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댐사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댐수익금에 대한 자료 공개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는 후술할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된 정보를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영업실적과 관련된 자료료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85]에 해당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86]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

85)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공시)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결산서
5.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최근 5년간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의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취업 현황을 포함한다)
8.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한정한다)
15.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중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1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8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환경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경영·운영활동을 보장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영업실적에 관한 자료를 개별법률에 따라 댐 관리를 지휘·감독하지 않는 특정 지자체(강원자치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도로·철도·전기·가스 등 공공시설 중 댐의 수입금 자료만을 한정하여 제출토록 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안 제68조의3)

현재 강원자치도 내 다목적댐은 총 2개소(소양강댐, 횡성댐)인데, 그 중 총저수용량이 10억톤 이상인 다목적댐은 소양강댐임. 개정안은 소양강댐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활용하여 댐 건설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받는 피해를 보상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재원>

현행 댐 주변지역지원사업 재원	개정안의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
1.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수입금의 **100분의 6** 2. 전전년도 생활용수·공업용수 판매를 통한 수입금의 **100분의 22**	1.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수입금의 **100분의 20** 2. 전전년도 생활용수·공업용수 판매를 통한 수입금의 **100분의 20**

특히, 강원자치도는 소양강댐 준공 후 50년간 주변지역의 피해액은 약 6조 8,300억에서 10조 1,500억원으로 추정되나, 지원금 현황은

1990년부터 2022년까지 약 32년간 1,120억원으로 피해추정액의 1~2% 수준에 불과하여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전국 27개 댐 전체 발전 및 용수판매 수입금 4,728억원 중 소양강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달하는 951억원이나, 실제 지원금은 댑수입금의 8.2%에 불과한 78억원에 불과하여, 전국 평균인 15.8%에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임.

<강원자치도 내 다목적댐 수입금 및 지원금 현황(2022년)>

(단위 : 백만원, %))

구분	댐수입금 (A)	지원금 (B)	수입금 대비 지원금 (B/A)
소양강댐	95,126	7,789	8.2
횡성댐	1,806	986	54.6
전국	472,800	74,666	15.8

※ 자료 : 강원자치도

따라서,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 필요성,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댐사용권자의 재산권 침해 여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이라는 강원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 보임.

참고로, 환경부는 현재 댐용수는 생산원가보다 낮은 요금(원가의 약 약 68%)으로 판매중으로, 시설 교체·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 회수도 어려운 실정이며, 2016년 이후 장기간 용수요금을 동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에 따라 수입금을 과도하게 추가 출연하게 될 경우 공

공기관(한국수자원공사)의 재무여건이 악화되어, 적정 시점의 시설 투자가 제약됨에 따라 안전 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용수 요금 인상까지 초래하여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오염총량관리제 지역개발부하량 관리에 관한 특례 (안 제68조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8조의4(오염총량관리제 지역개발부하량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수립·승인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지역개발계획부하량의 지역개발사업별 할당 시 지역개발사업의 승인·허가 등의 기관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협의하는 대상사업은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의 특례의 존속기한 등은 제69조를 준용한다.

현행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은 수계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기 위한 오염총량관리제[87]에 대해

87) "**오염총량관리제**"란 과학적 토대 위에서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허용부하량을 산정하여, 해당 총량관리단위유역 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목표수질을 달성 할 수 있는 허용부

규정하고 있음.

환경부훈령인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의하면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배출부하량 협의절차는 배출부하량할당 → 지역개발사업협의 → 사후관리 순으로 이루어짐.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등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여야 하며[88][89], 지역개발사업을 실시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지역개발부하량)을 할당받은 후 승인기관(시·군 사업부서)에 사업승인요청을 하여야 함.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① 승인기관은 환경청 평가부서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고, ② 환경청 평가부서와 환경청 총량부서 간 지역개발사업의 할당 및 부하량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총량(배출부하량) 협의를 한 뒤, ③ 환경청 평가부서가 승인기관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통보하여 승인기관이 사업자에게 사업승인을 하게 됨.

그런데, 절차 ①과 ③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권한은 "환경청 평가부서"에서 "강원자치도"로 이양되었음에도, 절차 ②에 해당하는 배출부하량 총량 협의에 관한 권한은 여전히 환경청 총량부서(원주환경청)에서 처리하여 연속적인 절차에서 협의권자가 상이한

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함(환경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2011)

88) 이와 관련한 조문은 참고자료 1 참조

89)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후단의 참고자료 2 참조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90]이 있음.

<지역개발사업협의 절차 및 권한 이양 여부>

구분	절차	권한 이양 여부
배출부하량할당	사업계획 수립 및 총량검토서 작성, 개발부하량 할당 요청 (사업자)	시·군의 권한
	⇩	
	적정성 검토 및 배출부하량 할당 (시·군)	
	⇩	
	사업승인요청 (사업자 → 승인기관)	
	⇩	
지역개발사업협의	①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승인기관 → **환경청 평가부서**)	이양
	⇩	
	② 총량(배출부하량) 협의 (**환경청 평가부서** ↔ **총량부서**)	**미이양**
	⇩	
	③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 (**환경청 평가부서** → 승인기관)	이양
	⇩	
	사업승인 (승인기관 → 사업자)	

※ 자료 : 강원자치도 제출 자료를 재구성

이에 개정안은 「강원도법」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한정하여[91],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개발부하량[92]을

90) 강원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 및 총량 협의 업무가 이원화되어 협의사업장 불편이 가중되고 업무처리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입장임.

91) 「강원도법」

지역개발사업별로 할당할 경우, 지역개발사업협의 중 총량(배출부하량) 협의 권한을 현행 “환경부장관(환경청 총량부서)”에서 “강원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지역개발 배출부하량 협의권자를 일원화하여 업무처리 효율성 및 민원 편의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특례 도입을 통해 달성되는 행정의 효율성, 수질오염총량제가 특정 행정단위가 아니라 상·하류 수계 전체에 일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전국적 차원에서 배출부하량을 조정하고 지역 간 갈등을 예방하는 환경부의 역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환경부는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지역개발 배출부하량 협의는 국가 전체 유역을 관리하는 환경부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지역개발부하량 산정에 대한 중립성 및 객관성이 필요하다는 점, 상·하류 수계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지자체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93].

제64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사업(「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은 제외한다)
2. 사업지역에 강원자치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

6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92) “**지역개발부하량**”이란 총량관리 계획기간 동안 개발사업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의미함

93) 구체적으로, 수질오염총량제가 행정구역 단위(시·도)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상하류 수계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개발사업 협의는 상하류 수계 목표수질을 일관된 기준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그 삭감계획
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삭감계획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그 초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

로 관리하는 국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시군별 할당 및 개발사업별 할당은 현재도 지자체에서 수행중으로, 목표수질 관리를 위해 지자체 할당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는 협의는 국가의 최소한의 역할이며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상·하류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환경부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계획
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참고1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조문

참고2 오염총량관리제 및 지역개발부하량의 이해

□ 오염총량관리제 개념

○ 기본계획에 단위유역(하천)의 목표수질과 할당부하량(오염물질 허용 총량)을 정하고 오염물질 배출총량이 허용총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

[관련 개념]

◦ 기본계획 : '21~'30(10년)까지 목표수질 달성을 위하여 도 단위 수립(환경부 승인)
◦ 단위유역 : 하천으로 집수되는 동일 영향권에 있는 지역(행정구역 경계와 상이)
◦ 목표수질 : '21~'30까지 달성해야 하는 수질 관리 목표 수치(환경부 고시)
◦ 부하량 : 물속에 있는 오염물질량(1㎏/일)으로 농도(mg/L)×유량(1L/일)
◦ 배출부하량 : 오염물질이 최종적으로 하천에 배출되는 양(분뇨→처리시설→방류)

- 할당부하량 : '21~'30까지 목표수질 달성 위해 배출 가능한 총량

(①기존오염부하량 + ②자연증감부하량 + **③지역개발부하량** - ④삭감부하량)

① 총량제 시작전 이미 배출되고 있는 기존 오염량(기조사 확정)
② 개발사업 외 소규모 오염원 변동량(인구, 가축두수 등 증가·감소)
③ 개발사업으로 인해 배출되는 오염 부하량(아파트, 공장 등)
④ 오염물질 삭감사업을 통해 감소되는 양(처리장 신·증설 등)

□ 지역개발부하량 협의

○ 도내 A시 할당부하량(기본계획에 정해진 양)이 100이고, 현재 ①+②가 50일 경우 허용 가능한 지역개발부하량은 50이 되는데, ③ 80 초과할 경우 ④는 추가 삭감 통한 여유량 확보 필요

기존오염부하량	+ 자연증감부하량	+ 지역개발부하량	- 삭감부하량
① 40	② 10	③ 80	④ 30

⇨ **환경부가 기승인한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만 협의가 가능하나, 기본계획 변경승인(환경부 승인사항)에 따라 부하량 변동은 가능**

- 추가 삭감을 위해 법에서 정한 수질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시 아래 예시와 같이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증빙서류(시험성적서 등) 필요

※ 자료 : 강원자치도 제출 자료를 재구성

(3)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안 제68조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8조의5(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직접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수질개선이 필요하거나 수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 중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복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94].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복원계획 수립·시행 명령 및 승인 권한을 강원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되 강원자치도지사가 직접 복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하려는 것으로, 복원계획 수립 및 승인 권한을 일원화하여 사업 추진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수생태계 복원계획 승인 절차 간소화 필요성,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이라는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94)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측정·조사 결과 수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 또는 수생태계 훼손 정도가 상당하여 수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복원계획(이하 "복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지역 가운데 복원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복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목적,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복원계획 수립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감독 역할[95]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환경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나, 복원계획 승인권한을 이양하는 경우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이라는 사업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일부 지원되므로 환경청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강원자치도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선정 권한이 강원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수생태계 복원계획 승인 절차도 강원자치도로 일원화하여 사업 추진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3) 군사보호 및 미활용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 (제3장)

(1)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업무 지자체 위탁 등 (안 70조)

현 행	개 정 안
제70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는 「군사기지 및	제70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

95) 환경부에 의하면, 일부 지자체는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시 제도운영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건강성 제고의 개선방안을 소홀히 하거나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우선으로 복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복원계획에 대한 목적 및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환경청의 개선·보완 의견 제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지자체가 수립한 수생태계 복원계획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환경청이 승인하고, 시·도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최종 심의하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음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구역등(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을 말하며, 이와 같다)---.
②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관할부대장등---------- 건의한 사항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4조에 따른 협의업무 위탁을 신청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해제 건의와 이에 따른 이유 제시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구역등----------.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고 함)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96]

96) 「군사기지법」

제3조(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①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의 건의(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등>

구분	내용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구역으로, 군사활동 보장 수준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
민간인통제선	군사분계선의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
비행안전구역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해 지정되는 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대공(對空)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구역

또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등 내에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97]과 협의하여야 하나[98], 동법 제14조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작전에

97)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을 의미하며(「군사기지법」 제8조제2항), 국방부에 의하면 통상 육군은 사단장급 지휘관이 이에 해당함

98) 「군사기지법」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2. 도로·철도·교량·운하·터널·수로·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4. 광물·토석(土石)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5. 해안의 굴착
6. 조림 또는 임목(林木)의 벌채
7.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8.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9.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10.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11. 해운의 영위
12.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13. 부표(浮標)·입표(立標),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등을 하려는 때에도 제1항을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서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보호구역등에 대해서는 소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협의업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함으로써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99].

현행 「강원도법」은 ① 강원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② 관할부대장은 건의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며, ③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사기지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① 강원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할부대장등(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에게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② 관할부대장등은 건의사항과 함께 「군사기지법」에 따른 협의업무 위탁 신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며, ③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해제 건의와 이에 따른 이유 제시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

적용한다.

1.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제10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2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등화의 설치·변경 또는 식물의 재배
2.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99) **「군사기지법」**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도시 지역 안의 보호구역, 농공 단지 등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서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또는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있어서의 제13조에 따른 협의업무를 제15조에 따른 소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할부대장등이 협의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합참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 및 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① 지정·변경·해제 건의	대상	관할부대장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
	범위	민간인통제선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② 이유제시	주체	관할부대장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
	범위	지정·변경·해제 건의	지정·변경·해제 건의 **협의업무 위탁 신청**
③지정·변경·해제 건의 및 이유제시 절차		별도로 규정 X	대통령령에 위임

이는 강원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군사기지법」 제14조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업무 위탁 신청 시 구체적인 미반영 사유를 제시받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행정 효율성을 증대하고 접경지역이라는 강원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보호구역등을 운용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 검토에 있어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등 지정· 업무의 특수성,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접경지역이라는 강원자치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군사기지법」 및 「강원도법」 은 보호구역등의 지정·해제 건의(「강원도법」 제70조제1항)와 달리 강원자치도 및 관할 시장·군수가 관할부대장등에게 협의업무를 위탁할 것을 건의할 수 있는 권

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100], 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강원자치도 민·관·군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73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2(강원특별자치도 민・관・군협력위원회) ① 강원자치도 내의 민・관・군 상생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민・관・군협력위원회(이하 "민・관・군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관・군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규정된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와 도민, 군(軍) 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민원 중 군(軍)과 관련한 민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관・군 상생 및 원활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민・관・군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1명씩 위촉한다. 1. 작전・훈련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원자치도에 둔 군단장급 군(軍) 지휘관 2. 강원자치도 관할구역 내의 시장 또는 군수 ④ 민・관・군협력위원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 간의 협의를 통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00) 참고로, 이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64)은 강원자치도 및 관할 시장·군수가 관할부대장등에게 협의업무를 위탁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강원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 제70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②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에게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또는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있어서의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업무를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⑤ 민・관・군협력위원회는 협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결과를 민・관・군협력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민・관・군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은 강원자치도 내 민·관·군 상생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민·관·군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강원도법」 상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관한 사항, 군과 관련된 민원 사항 등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른 민·관·군협력위원회>

구분	내용
목적	강원자치도 내 민·관·군 상생 및 원활한 업무 추진
협의사항	1. 「강원도법」 상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관한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와 도민, 군(軍) 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민원 중 군(軍)과 관련한 민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위원정수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공동위원장	1. 작전・훈련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원자치도에 둔 군단장급 군 지휘관 2. 강원자치도 관할구역 내의 시장 또는 군수
회의 개최 빈도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

접경지역이라는 강원자치도의 특수성과 「강원도법」이 보호구역의

해제, 군용지 활용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민·관·군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역주민, 군, 지방자치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은 "강원자치도 관할구역 내의 시장 또는 군수"를 민·관·군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관·군협력위원회가 강원자치도에 설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원자치도 내 특정 시장 또는 군수를 임명하는 것이 대표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방부는 동 조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관련 규정(§73의2)	의견 및 사유
제2항제1호	-(**신중검토**) 「강원도법」제70조제1항 및 제2항은 관할부대장등의 권한이므로 이를 협의사항에 포함할 경우 **관할부대장등**의 **권한**이 **위축**되어 보호구역등 지정·변경·해제 절차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음
제2항제2호 및 제3호	-(**수정필요**) 민·관과 관련된 군의 건의사항까지 포함하여 민·관·군협력위원회에서 균형되게 논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는 ·관·군 상생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므로 함께 규정하되, 민·관·군협력위원회 협의 안건에 대하여 민·관·군의 의견이 균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결정
제3항제2호	-(**신중검토**) 공동위원장을 군단장급 군(軍) 지휘관으로 위촉하려면 시장 또는 군수가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공동위원장을 위촉하는 것이 타당함
제5항 및 제6항	-(**수정필요**) 민·관·군협력위원회 협의결과를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검토할 수도 있으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
제7항	-(**수정필요**) 민·관·군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민·관·군의 의견이 균형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도조례**로'를 '**대통령령**으로'으로 변경

4) 관광 및 문화예술의 진흥 (제4장 신설)

(1) 지역특화 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 문화예술 진흥 지원 (안 제73조의3 및 제73조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장 관광 및 문화예술의 진흥
<신 설>	제73조의3(지역특화 관광산업의 육성) ① 도지사는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 관광산업 육성·지원 2.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치유형 관광산업 고도화 3. 지역명소를 활용한 야간관광산업 육성 4.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활동 지원 5. 그 밖에 관광산업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강원자치도의 지역특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73조의5(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지원)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고유한 문화예술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 시키고, 도민의 일상속 문화예술공존을 위한 지역문화예술 진흥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성화 지원 2. 국제문화예술교류 활성화 3. 문화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4.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지원 5.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육성 6.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 7.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안 제73조의3)

개정안은 강원자치도지사가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발굴·육성을 위해 지역특화 관광산업 육성·지원, 치유형 관광산업 고도화, 야간관광산업 육성 등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면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주도법」[101] 및 「전북도법」[102]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치유관광은 치료의 목적이 아니나 스트레스나 불안 등을 감소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시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관광활동이며, 야간관광은 야간시간대에 야간에만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콘텐츠, 축제 등을 즐기는 관광을 의미함.

개정안에 대하여는 치유·야간관광 등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시행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강원자치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101) 「제주도법」
제238조(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가 자율적으로 관광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하며, 관광진흥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제주자치도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자율과 책임에 따라 지역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의 관광진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국 단위의 관광정책 수립과 관광객 안전, 소비자 보호 및 관광 표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자치도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02) 「전북도법」
제46조(야간관광산업의 육성) ① 도지사는 야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야간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야간관광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2. 야간관광산업 개발 및 홍보
3. 야간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홍보·관광객 유치 확대
4. 그 밖에 전북자치도의 야간관광산업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48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①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과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사항인 점, 치유관광 진흥에 대하여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103]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국가 지원의 적절성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안 제73조의5)

개정안은 강원자치도 내의 문화예술 전통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주도법」[104]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는 강원자치도 내의 문화예술 전통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하기 위한 시책·사업 추진은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시행 가능하다는 점[105], 다른 지방자치

---

103) 배현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216호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192호

104) 「제주도법」
제257조의3(문화예술의 섬 조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가 고유한 문화예술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섬(이하 "문화예술의 섬"이라 한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예술교류 활성화
2.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성화 지원
3. 문화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4.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지원
5.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의 육성
6.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05)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체와의 형평성, 국가 지원의 적절성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국제회의산업의 육성 (안 제73조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4(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국가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2.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3.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4.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5.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확충 6. 국제회의 정보 및 통계의 수집·분석 7. 국제협력의 촉진 8. 전자국제회의기반 확충 9.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도시 지정기준에 맞는 특별시, 광역시 및 시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음[106].

106)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도시 지정기준에 맞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강원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강원자치도지사가 강원자치도 내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산업을 진흥하도록 하며, 국가가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는 「제주도법」[107] 및 「전북도법」[108]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강원자치도 내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

107) 「제주도법」

제254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내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2.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3.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4.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5.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확충
6. 국제협력의 촉진
7. 전자국제회의기반 확충
8.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08) 「전북도법」

제47조(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설치 취지를 살려 전북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2.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3.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4.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5.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확충
6. 국제협력의 촉진
7. 전자국제회의 기반 확충
8.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진흥에 필요한 사업

다만, 「제주도법」 및 「전북도법」의 경우 국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주자치도지사 및 전북자치도지사로 하여금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자립적 국제회의산업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국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논의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지정기준에 따라 국제회의도시를 지정한 점, 지정하는 경우에도 지역 간 균형적 발전을 고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4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동 법에 따라 강원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5) 보건복지 및 의료서비스 증진 (제5장 신설)

(1)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안 제73조의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5장 보건복지 및 의료서비스 증진 제73조의6(바이오헬스산업 육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바이오헬스산업”이라 한다) 발전기반의 조성,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생명공학, 의・약학 지식 및 의료데이터에 기초하여 인체

	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2.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제조업 3.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등 의료·건강관리 서비스업 ② 도지사는 국가의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와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강원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강원자치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중심병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① 강원자치도지사가 바이오헬스산업 발전기반의 조성,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국가가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② 강원자치도지사가 국가 의료연구개발 활성화 및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강원 첨단의료복합단지[109]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며, ③ 국가 및 강원자치도가 연구중심병원[110] 육성을

109)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지를 말한다.

110)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과 같은 법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중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병원의 연구조직, 연구인력, 연구 시설·장비 등 연구 기반 인프라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최근 3년간의 병원의 연구 실적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위해 노력하도록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①, ④	- 바이오헬스산업 발전기반의 조성, 사업화 추진 등을 위한 시책 추진 1. 생명공학, 의·약학 지식 및 의료데이터에 기초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 서비스 제공 산업 2.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제조업 3.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등 의료·건강관리 서비스업 -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②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추진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한 조치 가능
③	- 국가 및 강원자치도의 연구중심병원 육성 노력 -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첨단의료 혁신거점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의 적정성, 첨단 바이오는 12대 국가전략기술[111] 중 하나로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종합적으로 육성될 예정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특히, 정부는 강원자치도 내 춘천·홍천을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24.6)한 상황이므로, 이와 별도로 강원자치도가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또한, 법제적 측면에서 안 제73조의6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5장(보건복지 및 의료서비스 증진)에 두

111)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사용후핵연료 처분 기술 포함),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안 제73조의6제2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첨단의료단지특별법」의 입법취지[112]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강원도법」에 첨단복합단지 조성을 명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추가 조성하는 것은 이미 지정된 단지(오송, 대구)의 우선 활성화 및 한정된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 및 관계 부처의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임.

또한, 안 제73조의6제3항에 대해서는 연구중심병원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라 인증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중복될 여지가 있다는 점, 「강원도법」에 연구중심병원 육성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명시하는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대구, 청주에 2개소, 연구중심병원은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등에 총 10개소가 조성되어 있음.

112) 구체적으로, 첨단복합단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첨단복합단지의 최적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첨단복합단지 입지는 동 법에 따른 구역을 우선 검토·조성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는 설명임.

(2) **비대면 진료·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안 제73조의7 및 안제73조의8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7(비대면진료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강원자치도에 개설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에 거주하는 환자에게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대면진료의 보조적 방법으로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다. 1. 지속적 관찰 2. 상담·교육 3. 진단 및 처방 ② 비대면진료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할 수 있다. 1. 동일 의료기관에서 질환에 관계없이 대면 진료한 이력이 있는 자 2. 대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의료취약지 또는 의료기관과 거리가 먼 지역으로 도지사가 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나. 휴일·야간의 진료가 필요한 자 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정함)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감염병 환자로 확진되어 같은 법 제42조, 제47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격리된 자

	③ 제1항에 따른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내 지방의료원에 한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재진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④ 비대면진료를 하는 자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신 설>	제73조의8(의료인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도 도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의료인 면허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제73조의7)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113]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함.

개정안은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가원자치도 내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강원자치도 내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하고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에 따른 비대면진료>

구분	내용

113)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함(「의료법」 제2조제1항)

대상 의료인	강원자치도에 개설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의료기관	① 의원급 의료기관 ② 강원자치도 내 지방의료원 ③ 병원급 의료기관(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재진환자)		
환자의 요건	강원자치도 내 거주	&	① 동일 기관에서 대면진료한 이력이 있는 자
			② 대면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 중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 (1) 의료취약지 또는 의료기관과 거리가 먼 지역 거주자 (2) 휴일·야간 진료가 필요한 자 (3) 만 65세 이상의 노인(장기요양등급자) (4) 장애인 (5) 감염병 환자로 확진되어 격리된 자
비대면진료 방식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대면진료의 보조적 방법으로, ① 지속적 관찰, ② 상담·교육, ③ 진단 및 처방을 수행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강원자치도 내 의료취약지의 의료접근성 향상 필요성[114],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비대면 의료 실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73조의8에 따라 강원자치도 내 의료인의 비전속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강원자치도 내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제주도법」은 외국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원격 의료를 통해 현지 의료인에게 진료지원이 가능하도록 원격의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115].

114) 강원자치도에 의하면, 강원자치도 내 춘천·강릉·원주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군이 의료취약지로 지정되어 있음.

115) 「제주도법」
제313조(원격의료에 관한 특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한편,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116] 및 「의료법」[117]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수립하여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약국 등에 한하여 비대면진료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118].

(안 제73조의8)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는 없으나,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도록 할 수 있음[119].

---

116)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117)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18) 또한,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진료방법으로 이루어지되, 대면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에 대해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119)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거나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도 강원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일명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특례를 규정하여 강원자치도 내 의료취약지[120]의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로, 「제주도법」 제315조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121].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다만, 강원자치도 내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 허용 특례를 규정할지 여부는 강원자치도 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접근성 향상 필요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비전속진료 허용 범위[122] 등을 종합적으

---

12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분석하여야 한다.
1. 인구 수, 성별·연령별 인구 분포, 소득 등에 따른 지역 내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의료인력·의료기관의 수 등 지역 내 의료공급에 관한 사항
3.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의료기관 접근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 공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분석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21) 「제주도법」
제315조(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주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도 제주자치도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10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의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122)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① 제주특별법 제315조제2항에 따른 비전속진료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은 면허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제주특별법 제315조제1항에 따라 진료를 하고자 하는 비전속진료 의료인은 인적사항, 진료일정, 필요한

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에 의하면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비전속진료가 허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전속진료가 허용되는 의료행의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대법원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정기적·계속적 비전속 행위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123],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124].

(3)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 (안 제73조의9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9(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에 관한 특례) 「약사법」 제4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연중무휴(無休) 점포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경영할 것 2. 6시부터 24시까지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출 것 3. 「약사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할 것 4.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위해(危害)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시설 장비 등 운영계획을 미리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책임 있는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3) 대법원은 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이 사실상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하여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959 판결).

124) 대법원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은 채 영상판독을 거쳐 품질관리 적합판정을 받고 등록된 전산화단층 촬영장치를 활용한 전산화단층 영상진단료 등을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과 관련하여,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출근하여야만 의료영상 품질관리,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음.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9624 판결)

현행 「약사법」[125]에 의하면 안전상비의약품[126]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여야 하는데,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와 보건복지부령[127]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함.

개정안은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 내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가 없는 읍・면・동 지역에 대해서도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안정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강원자치도 내 주민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128].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등록기준>

현행	개정안
①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 보유	① **6~24시**까지 연중 무휴 점포 보유

125) 「약사법」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① 안전상비의약품(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26)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약사법」 제44조의2제1항)

127) 「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경영할 것
2.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를 갖출 것
3.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할 것
4.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위해(危害)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128) 강원자치도에 의하면 강원자치도 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소가 없는 읍・면・동은 전체 187개소 중 30개소로, 상비약이 필요한 경우 멀리 이동해야 하는 실정임.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경영	② ~ ④ 좌동
③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	
④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강원자치도 내 의료접근성 향상 필요성,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점포 운영시간과 관련된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것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129]을 활용하여 안전상비의약품 미판매지역을 지정하여 해결이 가능하므로 안정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을 「강원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29)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특수장소"라 한다.)에서의 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여할 수 있는자(이하 '취급자'라 한다), 취급자의 지시·감독을 받아 동 업무에 종사할 자(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와 판매 또는 수여할 수 있는 의약품(이하 '취급의약품'이라 한다) 등의 지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장소의 지정 등)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7. 도서·벽지·접적지역 중 시·읍의 경우 3㎞ 이내, 면의 경우 2㎞ 이내에 약국·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지역으로 1개소. 이 경우 인근 행정구역의 사정도 감안하여야 한다.

6) 지역경제 진흥 및 산업경쟁력 강화 (제6장 신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안 제73조의10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6장 지역경제 진흥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제73조의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지구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제35조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 2. 제49조에 따른 농촌활력촉진지구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은 용도지역[130] 내 건폐율과 용적률[131]의 최대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최대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132].

130)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며(「국토계획법」 제2조제15호),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구분됨(동법 제36조제1항)

131)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바닥 면적의 비율로 건축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로 건축물에 의한 토지의 이용도를 나타내는 지표임(표준국어대사전).

132) **「국토계획법」**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은 「강원도법」 에 따라 강원자치도지사가 승인하는 지구인 산림이용진흥지구 및 농촌활력지구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제주도법」[133],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134] 및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135] 등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토지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토지 활용도 증대 필요성,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기준

133) 「제주도법」
제40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② 제주자치도에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시설(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 및 관광객의 관광·휴양을 위하여 설치하는 편의시설·관광시설을 포함한다)의 결정·구조·설치의 기준 및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관광숙박시설인 경우에는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134)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35)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0조의3(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②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2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구분	용도지역		기능	건폐율(%)	용적률(%)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전용	단독주택 중심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50	50 ~ 100
		제2종전용	공동주택 중심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50	50 ~ 150
		제1종일반	저층주택 중심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60	100 ~ 200
		제2종일반	중층주택 중심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60	100 ~ 250
		제3종일반	중고층주택 중심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50	100 ~ 300
		준주거	주거기능 위주에서 일부 상업기능 보완	70	200 ~ 500
	상업지역	중심상업	도심・부도심의 상업 및 업무기능의 확충	90	200 ~ 1500
		일반상업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	80	200 ~ 1300
		근린상업	근린지역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	70	200 ~ 900
		유통상업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	80	200 ~ 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 등 수용	70	150 ~ 300
		일반공업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	70	150 ~ 350
		준공업	경공업 등 수용 및 주상업 및 업무기능 보완	70	150 ~ 400
	녹지지역	보전녹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 보전	20	50 ~ 80
		생산녹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	20	50 ~ 100
		자연녹지	녹지확보, 장래 도시용지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	20	50 ~ 100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	자연환경·산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20	50 ~ 80
		생산관리	농업·임업 생산 등을 위하여 필요하나, 농림지역으로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20	50 ~ 80
		계획관리	도시지역 편입 예상,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	40	50 ~ 100
	농림지역		농림업 진흥 및 산림 보전	20	50 ~ 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등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	20	50 ~ 80

※「국토계획법」 제77조·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85조

(2) 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안 제73조의11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11(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고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 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인구 10만명 미만 도시에 있는 같은 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도조례로 정한다.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는데[136],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음.

13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가능 지역>

구분	지역
제1호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제2호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한, 제1호에 해당하는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 대해서는 동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의 원인을 이유로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137],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고 있음[138].

개정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 중 인구 10만명 미만 지역에 대한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해당 지역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13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

13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일 때 그 바닥면적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강원자치도 내 18개 시·군 중 원주·춘천·강릉시를 제외한 15개 시·군의 인구가 10만명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강원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교통정책 수립이 가능하며, 현재 도시교통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15개 시·군으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여 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강원자치도 내 시·군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시·군	징수액		
	2021년	2022년	2023년
춘천시	360	528	570
원주시	706	722	1,014
강릉시	359	512	498
합 계	1,425	1,762	2,082

※ 자료 : 강원자치도

다만, 개정안 검토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할 필요성,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제주도법」은 개정안에 따라 이양되는 권한 중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에 관한 권한만 제주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있음[139].

국토교통부는 단위부담금은 인구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고

139) 「제주도법」
제430조(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7항,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있는 교통유발계수와는 달리 면적규모로만 분류하고 있어 인구 10만 미만 도시에서만 조례로 따로 규정하여 전국적인 기준과 다르게 운영할 필요성이 낮고, 현재도 조례로써 100% 상향 또는 50% 하향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140]하고 있어 현행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임.

반면, 교통유발계수는 10만명 미만 도시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인구 10만명 미만 도시를 도조례로써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검토 중이므로 교통유발계수를 반드시 도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닌, 재량에 따라 규정하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지역 건설산업의 진흥 (안 제73조의12부터 안 제73조의14까지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12(지역 건설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 건설업체의 보호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건설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73조의13(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실

14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태조사의 목적, 방법과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범위·시기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3조의14(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관한 특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강원자치도 내에서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국가정책사업 중 지방비 투입사업 2.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3.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안 제73조의12 및 제73조의13)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자체장[141]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성실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관계 기관

141) 단,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됨

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142].

개정안은 강원자치도지사가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 건설업체의 보호 등을 위한 지역 건설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이는 강원자치도지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건설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강원자치도지사가 지역 내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강원자치도의 지역 건설업체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참고로, 「제주도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실태조사에 관한 권한을 제주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있음[143].

---

142)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의 육성, 건설기술의 개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때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경우
2. 건설사업자 또는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그 밖에 건설공사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 관계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 관계 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안 제73조의14)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144] 의하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또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

---

143) 「제주도법」

제424조(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특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1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에 한정한다), 제82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에 한정한다), 제82조의2(이양된 권한에 관한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등록말소에 한정한다), 제83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한정한다), 제85조의2제3항, 제85조의3, 제86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 제92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한정한다) 및 제101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144)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회계원칙 등)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하 "계약질서위반행위"라 한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정당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정당업자의 계약질서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질서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질서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는데, 동 법령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공공기관운영법」 및 「국가계약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강원자치도 내에서 발주하는 ① 국가정책사업 중 지방비 투입사업, ②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③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다만, 강원자치도 내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특정 사업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의 취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입찰참가자격기준 적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은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입찰참가자격을 지역별로 달리 정하는 것은 참가자격을 규정한 취지에 위반되며 통일된 국가계약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타 특별자치시·도에서도 지역산업 보호를 위해 특례요청 수요증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활용 (안 제73조의1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15(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 ① 도지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의 조사와 개발ㆍ이용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ㆍ육성 및 해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발전지구의 주변 지역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ㆍ육성 및 해제하거나 주변 지역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강원자치도지사에게 신·재생에너지[145]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강원자치도지사가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체계적인 개발 및 발전의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육성 및 해제하고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145)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을 의미하며,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등을 의미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는 강원자치도 내 풍력[146]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이해되고, 「제주도법」[147] 및 「전북도법」[148]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탈탄소를 실현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

146) 강원자치도에 의하면, 강원자치도의 풍력발전기 운영 대수(216대_ 및 풍력 설비용량 점유율(26.48%)은 전국에서 가장 높음.

147) 「제주도법」

제304조(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적정관리와 조사, 풍력발전설비의 사후관리 및 풍력자원의 개발과 이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303조제1항에 따라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운영능력을 갖춘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법인·출연법인을 포함한다)
2.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자
3. 도조례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 미만의 소규모 풍력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

④ 제3항과 제303조제1항에 따라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한 자는 안정적인 풍력발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하는 자에게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풍력발전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주변지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48) 「전북도법」

제31조(신·재생에너지자원의 공공적 관리) ① 도지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육성 및 해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주변지역을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육성 및 해제하거나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제주자치도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중 풍력에 관한 권한만 이양되었다는 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149]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및 시범단지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전북도법」의 시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법령상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활성화를 위한 입지제도가 이미 규정되어 입법 실익이 적고, 현장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점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5)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안 제73조의1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16(수소산업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수소산업"이라 한다) 발전기반의 조성,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4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2.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1. 지역특화 수소산업 육성・지원 2. 지역의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 보급 및 활성화 3. 그 밖에 수소산업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강원자치도지사가 수소기반 발전기반의 조성,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지역적 특성에 맞춰 구체화한 것으로 보임[150].

이는 현재 강원자치도 내에 '수소 전문산업단지(삼척시)[151]' 및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동해시, 삼척시)[152]'를 조성하고 있는 것과 연계하여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수소는 12대 국가전략기술[153] 중 하나로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종합적으로 육성될 예정인 점,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이 문제되고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

15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산업 육성, 청정수소의 개발・생산・보급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51) 강원자치도에 의하면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이며, 삼척시에 263억원을 투입하여 수소 기업 입주 공간, 공장 등을 건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152) 강원자치도에 의하면,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이며, 3,177억원을 투입하여 산업진흥센터, 수소액화플랜트 등을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153)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사용후핵연료 처분 기술 포함),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전북도법」은 전북자치도지사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154].

개정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면 국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6) 석탄경석 자원화 (안 제73조17부터 안 제73조의19까지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17(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강원자치도 내 폐광지역 석탄채굴 과정에서 발생한 경석[硬石, 「광업법」 제3조에 따른 석탄의 폐광(廢鑛)으로 보며, 광업권 설정 구역 외의 지역에 적치되어 있는 경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경석이 신속하게 산업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제품화를 지원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73조의18(민관 협력 촉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3조의17제2항의 규제혁신을 위하여 학계·연구기관·산업계·정부 간의 협의체 구성 및 공동연구 등 교류와 협력·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54) 「전북도법」
제30조(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활성화) 도지사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신 설>	제73조의19(국유림의 산지 내의 경석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 ① 국유림 산지 내에서 제73조의17제1항에 따라 경석을 산업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경석에 한정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지관리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상양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등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한정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로서 도지사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 제73조의17 및 제73조의18)

개정안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강원자치도 내 폐광지역 석탄 채굴 과정에서 발생한 석탄경석[155]을 산업자원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② 석탄경석을 산업자원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 협력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그동안 석탄경석은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취급되어 왔는데, 최근 석탄 경석을 건축자재·세라믹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석탄경석의 산업적 가치가 인정받고 있음[156].

이에 개정안은 현재 강원자치도의 폐광지역 내 산재한 약 2,000여만

155)“경석(硬石)”이란 석탄의 부산물로서 석탄 광산의 굴착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과 선탄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저급탄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자연석의 일부임

15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석탄 경석’ 신소재 원료된다…폐기물 규제에서 제외”, 2024.06.14.

톤의 석탄경석을 자원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참고로, 환경부는 석탄채굴 과정에서 발생한 경석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석탄을 제외한 나머지 부산물인 폐석, 광물 찌꺼기인 석탄 경석의 정의에 “석탄의 광재[157]” 개념까지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158], 폐광(예정)으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한 태백, 삼척 등 강원 일부 지역에 대해 경석을 활용한 대체산업 발굴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산업적 활용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당초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강원도법」 전부개정법률안[159]에 폐광지역 경석에 광물 지위를 부여하는 특례가 포함되어 있었으나[160], 국회 심사 단계에서 제외되었음[161].

(안 제73조의19)

개정안은 국유림 산지 내에서 석탄경석을 산업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 일부를 강원자치도지

157) 광재(鑛滓)는 제련하고 난 찌꺼기를 의미함

158) 구체적으로, 그간 경석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폐기물 세부분류에 따라 “선광공정광재*”로 구분하여 폐기물로 관리되어 온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환경부 질의·회신, ‘23.8.1.).
* 광물의 물리적 특성의 차를 이용하여 주로 물리적 내지 기계적 방법에 의해서 유가광물과 폐석으로 선별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광재

159)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9855

160) **의안번호 제211985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
제122조(폐광지역 경석의 광물 지위 부여 특례) 강원자치도의 폐광지역 안에서 석탄채굴과정에서 발생한 경석(硬石)은 「광업법」 제3조제1호의 광물로 본다.

161) 석탄경석의 성질상 광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 유해물질 함유에 따라 폐기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환경부 의견, 「광업법」 개정 등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 등이 제시되었음.

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산지관리법」 제35조제1항[162]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법」에 따라 강원자치도지사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지관리법」 및 개정안에 따른 무상양여 기준 비교>

구분	내용
「산지관리법」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 「도로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도로 또는 철도를 설치·개량하거나 전원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토석을 그 공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광산피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하여 광물의 생산과정에서 채취한 토석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공용·공공용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채취한 토석을 그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개정안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이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등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한정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로서 **도지사**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연속적인 산지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162) 「산지관리법」
제35조(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무상양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 「도로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도로 또는 철도를 설치·개량하거나 전원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토석을 그 공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나.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광산피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하여 광물의 생산과정에서 채취한 토석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공용·공공용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채취한 토석을 그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통일적인 규제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 「제주도법」, 「전북도법」 및 현행 「강원도법」이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은 위임·이양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산림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관련 규정(§73의19)	의견 및 사유
제1항	-(**신중검토**) 동일 공간에서 **토지**(국유림: 산림청장) 및 **부속물**(경석: 강원도지사)의 **관리주체**가 **상이**할 경우 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가 어려우며,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사용허가), 처분(매각·양여) 권한을 특별법으로 위임·이양한 **입법례**가 없으며, 광물채굴 완료 후 경석매각을 사유로 기한없이 국유림이 미복구된 상태로 존치될 경우 토사유출, 경관훼손 등에 따른 **재해발생** 등이 우려됨
제2항	-(**수정필요**) **경석의 매각 권한**은 산림청장에게 있으므로 연구개발 등 공용·공공용 무상양여의 타당성 여부는 도지사가 아닌 산림청장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도지사"를 "산림청장"으로 수정 필요
제3항 **<신 설>**	-(**신설필요**) 석탄광산 폐광 후 광해광업공단의 산지복구 추진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산지복구 완료 전에 국유림 내 적치되어 있는 경석에 대한 원활한 매각을 위해 관련 조치가 필요함

(7) **핵심광물 산업화** (안 제73조의20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20(핵심광물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① 도지사는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원 등으로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중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외의 광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이하 이 조에서 "핵심광물"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공급 및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자원안보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핵심광물의 생산기반 확충 2. 핵심광물 산업 관련 기술 및 대체물질 등의 연구개발·실증 3. 핵심광물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강원자치도지사로 하여금 강원자치도 내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강원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자원안보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강원자치도 내 국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티타늄, 텅스텐 등 핵심광물

이 부존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 차원의 투자를 통해 핵심광물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다만, 2025년 2월 7일 시행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자원안보와 관련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지역적 특성을 지역안보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163]

(8) 강원경제자유구역 내 공유재산 임대조건 완화 (안 제73조의21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21(경제자유구역의 공유재산의 임대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16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2024.2.6. 제정, 2025.2.7.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핵심자원"이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그 밖의 에너지원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
나.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중 가목 외의 광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이하 "핵심광물"이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자원안보와 관련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원안보시책이 필요한 경우 국가의 자원안보시책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자원안보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지역자원안보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강원자치도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해야 한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은 행정재산[164]의 대부·매각·양여 및 수의 방식의 사용허가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하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 및 일반재산(토지)의 대부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165]

개정안은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166] 내 강원자

164)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음.

165) 「공유재산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제31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2. 제1호 외의 재산: 1년

치도가 소유하는 토지를 국기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에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그 기간을 20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을 경제자유구역에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참고로, 「제주도법」은 「제주도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국제기구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 수의계약, 임대기간, 영구시설축조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167]

행정안전부는 이미 현행 「공유재산법」에 근거하여 개정안에 규정하려는 공유재산의 수의 사용허가, 대부, 매각 등이 가능하며,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영구시설물이 존치하는 동안 해당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없으므로 임대보다 매

---

166)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의미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조)

167) **「제주도법」**

제165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도지사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국제기구(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공장과 그 밖의 국유재산·공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각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매입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하는 것이 공유재산의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라. 벌칙 (제6편, 안 제83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3조의2(국제학교에 관한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의12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제48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8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4. 제48조의19에 따라 준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폐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를 폐쇄한 자 5. 제48조의19에 따라 준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제학교의 재산을 해당 국제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한 자 ② 제48조의19에 따라 준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국제학교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국제학교 설치에 관해 규정한 안 제48조의9부터 제48조의20과 관련하여 설립승인을 받지 않고 국제학교를 운영한 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학교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 것으로, 「제주도법」[168]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참조한 것으로 보임[169].

마. 부칙

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의회의 예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68) **「제주도법」**
제475조(국제학교에 관한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6조제2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제226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6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4. 제2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폐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를 폐쇄한 자

② 제2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국제학교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9)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0조제4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재산을 해당 외국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한 자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 도의회 예산에 관한 적용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안 시행에 있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이광희 의원)

전북특별법 및 강원특별법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다수의 특례가 중앙정부의 입장에 따라 좌우되면서 지방의회 및 주민참여 등 자치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바,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통합특별시·특별자치도 및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이양의 적정 수준과 범위를 검토·보완할 필요가 있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